

소나무류 생산확인표

제	호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굴취·벌채 장소		수량	그루/㎡
수종		용도	
수요처		이동일	
유효기간	○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: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○ 그 밖의 경우: 생산확인표 발급일부터 45일 이내		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」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



(담당자: 성명, 전화번호)

유의사항

- 1. 이 확인증은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.
- 2. 이 확인증의 기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